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2	전단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 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 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3	절곡기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 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4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설기계는 제외
5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
		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
		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 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³)의 곱이 0.1 미만
		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 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
		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
		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ㆍ너
		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
		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
		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
		함된다.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
		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
7	롤러기	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
		는 제외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
		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8	사출성형기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9	고소작업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다. 노어요 고스작어가(「노어기계칭초지법 에 따르 거지 계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 에 한함)
10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 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 는 곤돌라는 제외
11	기계톱	<삭제 2020. 1. 15>
1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다. 가드식 방호장치라.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다. 수인식 방호장치
13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14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1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16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17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8	방폭구조 전기기계·기 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19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20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 력감지형 안전매트 나.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 험 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2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 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 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22	안전화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23	안전장갑	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4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25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26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 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27	전동식 호흡보호구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28	보호복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29	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3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 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1	용접용 보안면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 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 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 기 위한 보안면
32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 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 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 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 계(파쇄·절 단·혼합·제 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
		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
		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6	컨베이어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	리프트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공작기계(선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8	반, 드릴기,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
	평삭·형삭	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기, 밀링기)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9	목재가공용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둥근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톱, 대패,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
	를, 네케, 루타기,	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니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모떼기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고~~/ 기계)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
		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10	인쇄기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
		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 사례 2020 1 15>
11	(chamber)	<삭제 2020. 1. 15>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12	가스집합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13	용접기용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자동전격방지기	
14	롤러기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14	급정지장치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15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현국기 효계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목재가공용	
16	둥근톱 반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10	예방장치 및	접촉예방장치
	날접촉예방장치	
17	동력식 수동	드러지 스트레레이제 지수되는 카디이호 바이키의
17	대패용 칼날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접촉방지장치	
18	산업용 로봇	<삭제 2021. 3. 11>
	안전매트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20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1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22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23	잠수기	<삭 제 2020. 1. 15>